

# 食品規格 및 基準 管理體系의 國際化 推進

李 輽 寛

〈保健社會部 食品課長〉

健向上과 增進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目的

食品衛生法이 制定・公布(法律 第1008號 : '62. 1. 21)된 이래 지금까지 130種의 食品類에 대한 個別的인 規格基準을 制定・運用하고 있다.

우리나라 加工食品의 品質管理는 個別規格과 基準이 制定되어 있는 食品은 그 規格을 適用하고 있으나 規格基準이 制定되지 아니한 食品은 一般 規格基準中 必要한 項目을 選定하여 品質management를 實施하고 있다.

食品衛生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告示한 食品等의 規格 및 基準에서는 當該食品의 規格과 試驗方法 為主의 品質管理制度를 運用하고 있으나 先進諸國과 Codex國際食品規格은 食品製造用 原料의 購入處理要領에서부터 完製品이 最終 消費者에게 供給되기까지의 製造, 流通 및 品質標示事項等에 대한 規格과 基準을 包括化 管理하고 있는 바 '87年度부터는 現行 國內 食品規格을 全面的으로 再檢討 補完하여 그 管理體系를 國際化하므로서 實質的인 製品의 品質向上과 良質의 安全食品을 生產供給토록 하여 國民保

## 2. 各國의 食品規格 管理實態

### (1) 우리나라

#### 1) 個別規格 및 基準 制定食品

保健社會部長官이 國民保健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食品類에 대하여는 個別規格 및 基準을 制定告示토록 하므로서 '86년 11월 30일 현재 간장을 비롯하여 총 130個 食品에 대한 規格基準을 運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食品中 乳製品, 食肉製品, 豆乳製品에 대하여는 製造基準 또는 保存基準이 制定되어 있으나 其他 食品類는 性分에 관한 規格과 이에 따른 試驗方法만이 制定되어 있을 뿐 製品에 대한 基準은 制定되어 있지 아니한 實情이다.

#### 2) 規格 및 基準 未制定食品

個別規格 및 基準이 制定되지 아니한 食品中에서 自家規格 檢討對象 業種을 除外한 모든 食品은 그 製品의 一般的 卫生狀態를 판단하는 硒素, 重金屬, 抗生物質, 異物 및 타알

색소등에 대한 一般規格 檢查項目中에서 必要하다고 판단되는 事項에 대한 品質管理를 하도록 하고 있다.

### 3) 自家規格 및 基準 檢討承認

法第7條의 規程에 의하여 個別規格 및 基準이 制定되지 아니한 食品中 營養等食品, 雜糧, 食用油脂, 인스탄트식품, 두부류, 당류, 輸入食品에 대하여는 각 食品의 製造 및 輸入業者가 製品의 品質管理에 必要한 自家品質規格 및 基準을 制定한 후 國立保健院 또는 各市·道 保健研究所의 事前檢討 承認을 받은 후 이에 따라 品質management를 하도록 하고 있다.

### 4) 其他

통, 병조림食品을 비롯하여 果菜類飲料, 양조식초, 어육연제품, 茶類, 효소식품, 장류식품, 食肉製品等 8種의 食品에 대하여는 그 製品의 主原料 成分에 대한 최소함량基準을 규정하는 食品等의 成分配合基準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特定成分을 製品명칭으로 使用할 수 있는 原材料의 최소함량기준을 정한 加工食品中 特定成分 原材料配合基準을 定하고 있다.

그 외에도 食肉製品과 乳加工品의 衛生的 management를 위한 食品保存方法에 대한 권장기준과 食品接客業所의 衛生水準向上을 위한 냉면육수 등의 미생물에 관한 권장규격을 제정, 管理하고 있다.

## (2) 日本

### 1) 個別規格 및 基準 制定食品

清涼飲料를 비롯한 빙과류, 食肉製品, 어육연제품, 냉동식품, 인스탄트면류, 식용유지등 24個 食品類에 대하여 硫素, 重金屬, 대장균群, 세균수등에 대한 衛生規格과 製造 및 保存方法等에 대한 基準을 制定, 管理하고 있다.

우리나라 食品規格 management體系와의 차이점은 食品의 品質management規格인 蛋白質, 脂肪, 無機質等과 같은 規格은 業所의 自律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同成分에 관한 製品의 品質management에

관하여는 日本農林規格(JAS)에서 정한 諸般規程에 의하여 品質management하는 점이 우리나라의 品質管理制度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 2) 規格基準 未制定食品

우리나라와 같이 規格基準이 制定되지 아니한 食品類에 대하여는 抗生物質의 一般基準 및 保存方法等에 대한 規格에 따라 品質management하도록 하고 있다.

### 3) 日本農林規格(JAS)

食品衛生法에서는 製品의 衛生에 관한 規格管理만을 實施하도록 하는 반면 食品의 品質에 대하여는 日本農林規格에서 정한 成分規格이상인 製品에 대하여 政府의 承認을 받아 品質檢查標示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主要內容으로는 각 製品別 品目名, 定義, 成分規格, 添加物의 使用基準, 保存基準, 有效期間, 標示基準, 成分配合基準等을 總括規程하므로서 각 食品의 品質management에 必要한 規格과 基準을 綜合한 内容으로 管理하고 있다.

## (3) Codex 國際食品規格

### 1) 沿革

世界食糧農業機構(FAO)는 第11次 總會에서, 世界保健機構(WHO)는 第29次 執行理事會議에서 兩機構가 共同으로 主管하는 FAO/WHO 공동국제식품규격위원회(FAO/WHO Joint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設立을 결의함에 따라 消費者的 健康保護, 食品交易增進, 國際的인 食品規格制定과 會員國간의 食品產業에 관한 情報交換等을 目的으로 1963年度에 設立된 國際的인 食品規格委員會다.

'86년 11월 30일 현재 世界 129個 國家가 會員國으로 加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70年 5月 76번째의 會員國으로 加入하여 '83年 第15次 總會에서 아시아 및 中東지역 代表理事國으로 선임된 후 지금까지 代表理事國으로 활약하고 있다.

## 2) 食品規格 制定實態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11個 食品群中 172種의 個別食品에 대하여 定義, 成分規格, 品質管理要件, 添加物 使用基準, 標示事項(製品名, 品目名, 重量, 製造者 住所, 製造國名)과 시료 채취 및 分析方法等을 수재하여 會員國들로 하여금 적극 이행하도록 권장 管理하고 있다.

食 品 群	規 格 基 準 制 定 食 品
果菜類 통조림	도마도등 31種
당류(벌꿀포함)	백설탕등 17種
食 肉 制 品	쇠고기통조림등 6種
어 육 연 제 품	연어등 13種
코 코 아	코코아버터等 5種
急速 冷凍 食品	냉동딸기등 16種
特殊食餌用食品	이유식등 5種
果 汁 飲 料	살구음료등 19種
食 用 油 脂	大豆油등 23種
乳 加 工 品	버터等 16種
其 他 食 品	광침수등 2種

## 3. 國內 食品規格 및 基準 管理 體制의 問題點

1) 食品規格基準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防止와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두가지의 目的을 充足하기 위한 방향으로 管理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食品을 除外하고는 完製品의 規格爲主로만 品質管理되므로製品에 使用되는 原料의 구비요건, 製造基準, 保存基準 및 品質標示基準等에 대한 細部基準이 制定되지 아니하여 製品의 製造과정에 있어서 總括的인 品質管理制度가 確立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2) 또한 品質管理에 대한 各種 制度가 食品別로 一括的인 管理가 되지 못하고 散在되므로一般人들이 食品規格에 대한 理解增進이 어려워 各種 基準의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流通製品의 檢查時 規格 또는 標示基準을 違反하는 業所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原因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다.

## 4. 向後改善方向

### 1) 食品規格 體制의 國際化推進

個別規格 및 基準이 制定되어 있는 食品을 食品衛生法 第7條에서 規程된 營業種類別로 再分類 調整하므로서 一線行政機關과 關聯業所에서 製品의 許可와 規格적용에 混線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각 食品別 特性을 고려하여 年次別 對象食品을 選定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事項등에 대한 各種 基準을大幅 補強하여 安全食品 供給을 위한 品質管理의 效率化를 推進해 나아갈 計劃이다.

- ① 原料의 構備要件
- ② 製造基準
- ③ 保存基準
- ④ 標示基準(品質管理에 關한 事項에 局限)
- ⑤ 成分配合基準
- ⑥ 特定成分을 製品名으로 使用할 수 있는 原材料 含量基準
- ⑦ 試驗方法等

### 2) 食品成分規格의 強化

우리 나라의 食品規格과 先進外國 또는 Codex 國際食品規格에서 정한 食品別 成分規格을 相互 비교검토하여 先進外國의 規格 이상으로 基準을 改正하더라도 品質管理가 可能한 食品類에 대하여는 점차 규격을 上向調整하고 國立保健院과 協議하여 현재의 試驗方法中 先進諸國에서 새로이 開發된 試驗方法에 대하여도 再檢討, 調整해 나갈 계획이다.

### 3) 自家規格 承認製品의 公定規格化

國家檢査機關에서 自家規格 및 基準을 檢討承認한 對象食品類를 分析檢討하여 大衆化되어 있는 食品類에 대하여는 個別規格 및 基準을 새로 制定하여 自家規格 및 基準 檢討承認으로 인한 檢査機關의 業務簡素화와 民願人의 業務편의 도모를 위하고 公定規格을 制定하여 品質管理하도록 할 計劃이다. ■